

# 노인주거의 설계기준(1)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외) 1

##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내) 2

## 1. 노인주거의 필요성

노인간호와 노인을 위한 주거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과 우리 사회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따라 반작용으로 급속히 부각되는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사람들은 우선 오늘날처럼 나이가 많지 않았다. 중세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균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하였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의학은 물론 장기간의 치료와 간호라는 문제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특히 한국에서의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더욱더 근년에 들어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부터이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대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으므로 자연히 간호와 주거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초기 산업사회의 특징이라면 후기 산업사회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떠나 독립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한국도 서서히 후기 산업화사회의 양상이 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도시노인의 30%, 농촌노인의 60% 이상이 자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만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의 노인독립세대가 7%내외이던 것에 비교하면 급격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도시의 작고 비싼 주거로 인한 높은 생활비가 3세대 대가족을 단독세대인 핵가족으로 분열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경제력이 가장 약한 노인들이 홀로 남거나 얹혀 산다는 심적부담감으로 가족을 떠나도록 강요받게 된다.

노인 독립세대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더 이상 자녀로부터의 간섭이나 생활방식이 다른 자녀가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선진국형 고소득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가사 등을 책임져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오히려 노인세대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년전 중앙일보에서 조사된 자료에서 우리나라 중산층 노인의 56%가 노후를 위해 1억내외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에 절반에 이르는 28%는 2억이상을 준비했거나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의 경우는 자연히 독립된 양질의 노년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대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핵가족으로 떨어져 나온 노인 단독가구는 1990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331만 9천명 중 8.3%로서 57만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17.2%(57만명)는 부부 모두가 고령자 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고령자인 부부가구이며, 72.4%는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표 1] 참조). 이중 65세이상 노인단독가구는 1990년 현재 65세이상 노년인구 96만 3천 가구중 19.9%를 차지하는 19만 2천가구이며 노인부부 등 1세대로 구성된 가구는 23만 9천가구로 4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는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

으며.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택공급과 특별한 주거서

[표 1] 고령자의 가구 구성 (단위 : 명, %)

구분	전국		시부		군부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계	3,319,298	100	1,815,601	100	1,503,697	100
1세대 가구	597,871	18.0	229,227	12.7	367,899	24.5
-부부	570,871	17.2	213,944	11.8	356,331	23.7
-기타	27,596	0.8	16,028	0.9	11,568	0.8
2세대 가구	973,798	29.3	559,798	30.8	414,000	27.5
-부부+미혼자녀	442,962	13.3	2261,007	14.4	181,955	12.1
-편부모+미혼자녀	151,913	4.6	101,197	5.6	50,716	3.4
-부부+양친	29,347	0.9	13,919	0.8	15,428	1.0
-부부+편부모	85,769	2.6	30,985	1.7	54,784	3.6
-부부+부부의 형제자매	1,054	0.0	734	0.0	320	0.0
-기타	262,753	7.9	151,956	8.4	110,797	7.4
3세대 가구	1,387,087	41.5	862,073	47.5	516,014	34.3
-부부+미혼자녀+양친	296,288	8.9	164,060	9.0	132,228	8.8
-부부+미혼자녀+편부모	722,907	21.8	464,103	25.6	2,258,804	17.2
-기타	358,892	10.8	233,910	12.9	124,982	8.3
4세대 가구 이상	54,693	1.6	27,662	1.5	27,031	1.8
-단독가구	276,653	8.3	113,939	6.3	162,714	10.8
-비현연가구 및 기타	38,196	1.2	22,157	1.2	16,03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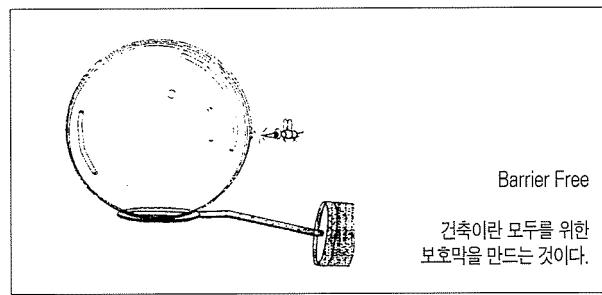
(자료: 1990년 인구주택센서스, 통계청)

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계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반드시 노인 단독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거 내에서의 자립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거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 2. 무장애 공간계획

‘장애물이 없는 건축이 모두를 위한 건축이다’

장애자나 노인을 위한 크고 작은 건축적 대안이나 이들을 위해 특별히 건축된 주택 등을 지칭할 때 우리는



[그림 1] ‘무장애 공간’ 건축

과거에 흔히 ‘장애자를 고려한’, ‘장애자에 친숙한’, ‘노인을 위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대부분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별도로 격리된 특별한 건축적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자신을 자라게 한 주변의 모든 사회적 토양속에 묻혀서 삶의 전부를 그 속에서 보낼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장애를 지닌 사람도 우선 우리의 사회 공동체속으로 재통합

되어야 한다.

‘무장애 공간’이란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즉, 모든 연령층과 모든 장애자가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는 공간을 지칭한다.

‘무장애 공간’이란 장애물 없이 만들어져 모든 주민이 생활공간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이의 도움없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제한없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애 공간’이란 항상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 주택을 예로들면 단순히 출입문의 폭이나 쓰레기장과 주차장 접근로에 한정되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 집을 방문하여 이용하는데도 전혀 장애가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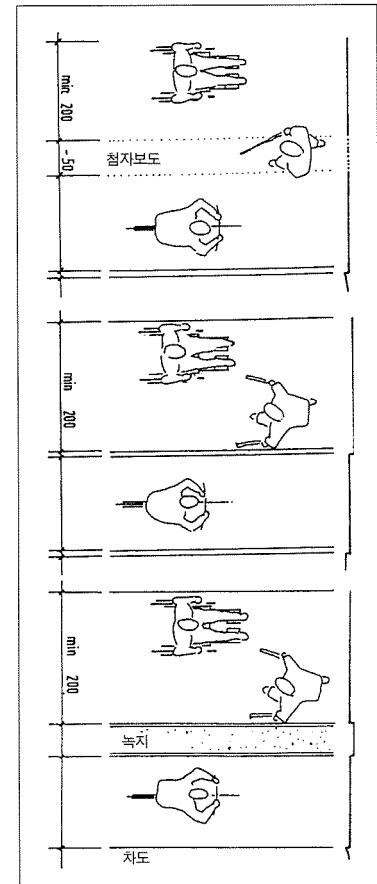
‘무장애 공간’이란 공동의 생활공간속에서 공생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며 의무이다.

‘무장애 공간’이란 ‘필요 이상의 것’도 아니지만 ‘가능 이하의 것’도 아니다.

‘무장애 공간’이란 일반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 면밀한 사전준비이다. 한 주택이 건축되어질 때 그 속에서 태어나서 늙어 갖가지 능력이 감퇴하여도 가능한 한 최대로 오래동안 자립하여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대비이다.

‘무장애 공간’이란 용통성이다. 개개인에게 적합한 작업대의 높이나 문의 손잡이 형태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무장애 공간’이란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주택에는 물론 주거지역, 공공교통시설, 관공서, 백화점 등 각종 공공시설, 직장, 놀이터 등 어느곳이나 장애를 지닌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 (1) 접근로

여기서 접근로라 함은 주거로 직접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 주거의 형태가 어떠하든 ‘무장애 공간’이라는 원리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

[그림 2] 접근로의 최소폭

거나 심지어 임대용 주택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접근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공간'이여야 한다. 모두의 의미 속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물론 그들을 방문하는 이들도 포함이 된다. 예외가 있다면 아마도 단독주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는 누가 의무화하여 '무장애 공간'을 관찰시킬 수 있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① 접근로는 반드시 턱과 단이 없어야 한다

② 접근로는 반드시 건물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cm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 120cm보다 좁아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유모차를 밀고오는 주부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행가능한 접근로의 넓이를 확보해야 한다.

③ 접근로는 측면경사가 없어야 한다.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직교되는 면으로의 경사는 휠체어의 전복 가능성은 물론 기타 보행장애자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④ 진행방향으로의 경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경사도는 6% 혹은 1/16을 초과하지 말고 전체 길이가 6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출입구 부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때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반드시 150cm x 150cm의 수평 정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근로 측면에 높이차이가 있을 때는 휠체어의 바퀴나 기타 보행장애자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10cm이상의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접근로의 표면은 평활해야 하고 장애가 되는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때 덜컹거리지 않아야 하고 목발이나 지팡이가 끼이거나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곳은 날에 웅덩이가 형성되거나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⑥ 접근로에서의 대문까지나 현관문에 이르는 연결로도 턱이 없어야 한다.

## (2) 현관 및 주출입구

이 영역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누구나 이웃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고 모든 주출입구나 현관문은 통과 가능한 폭을 유지해야 한다.

① 주택의 현관문이나 주출입구는 턱과 단차가 없어야 한다.

출입문의 턱은 일찍부터 문과 턱이 겹쳐지게 하여 외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각종 차음, 단열재료 및 건축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더이상 턱을 두는 것만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설득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올바른 출입문을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현대에 와서 문은 특별히 도난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하고 동시에 장식적이며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종종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커지게되고 무거워지게 된다. 때문에 개폐에 힘이들게 되며 특히 자동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문

을 닫기위한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도어체크가 소요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맞바람까지 가세할 경우 건장한 성인도 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애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 등의 모든 노약자가 다 피해자가 된다. 어두움 속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결쇠와 열쇠구멍을 정확히 찾는 것이 비단 나이많은 노인들만의 어려움 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출입문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이다.

열쇠 또한 점차 소형화되어 간다. 그러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손잡이 부분이 깔대기 모양으로 생긴 열쇠가 열쇠구멍에 정확히 밀어 넣기에 편리하다. 더 좋은 대안은 열쇠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것이 '무장애 공간'에 적합한 것인지를 항상 우선 생각하고 개별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② 출입문과 잠금장치의 선택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보조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 여부로 판단한다.

③ 열린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90cm

④ 출입문의 전.후에는 반드시 150cm x 150cm의 수평 정지면이 있어야 한다.

⑤ 개폐방법에 따라 여닫이와 미닫이의 수평 정지면 규격이 달라진다.

⑥ 주 출입문의 내.외부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120cm와 160cm 혹은 150~160cm높이에 광각 Door View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따라 설치높이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⑦ 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의 높이에 설치한다.

⑧ 각종 문패 등 표시물은 양각을 추천하며 글씨의 크기는 최소 1.5cm이상이 되게하고 배경과 글씨색은 선명도가 높아야 한다.

⑨ 초인종은 85cm의 바닥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상호 통화장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주거내에서의 인터폰 위치는 책상위나 전화기 높이의 벽체가 될 수 있으나 가급적 침실, 부엌, 거실, 욕실 등까지도 연결되는것이 바람직하다.

## (3) 승강기

'무장애 공간' 건축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이 승강기이다. 승강기는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이고 이 방법으로 수직동선이 해결되면 누구나 모든 층에 선택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층을 누구나 턱이나 단차 등의 장애없이 접근가능 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경우 귀결되는 한가지 유일한 최선책이 승강기이다.

이 해법에 기술적인 문제점은 전혀없다. 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는 상당한 액수의 설치 및 운용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다층주거에는 충분한 크기의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향후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의 내부규모는 최소한 안목치수 기준으로 폭 110cm, 깊이 140cm를 유지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승강기 내부 좌우측벽 중 한편에 승강기 조작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손잡이를 높이 80~100cm 위치에 설치한다.

④ 승강기 출입문 반대편 벽면에 상황분석용 거울의 부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자는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타고 내릴 때 거울을 통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조작기는 중간부분까지의 높이가 85cm가 되도록 하고 측면벽 모서리로부터 최소한 5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또한 조작기의 숫자배열은 수평으로 한다.

⑥ 조작기의 글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각으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는 최소 2~3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가능하면 모든 승강기는 음성안내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⑧ 승강기 호출버턴은 접근 장애가 없는 위치에 85cm 높이로 설치한다.

⑨ 승강기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되 통과하는 순간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자 감응장치는 출입문들에 바닥으로부터 각각 25cm와 75cm 높이에 설치한다.

⑩ 승강기 앞부분은 최소한 150×150cm의 회전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이 회전공간에 바로 면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 할 경우 최소한 계단폭만큼 비켜난 위치에서부터 내려가는 단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경사로

경사로는 경미한 단차이를 극복할 때에만 권장할 수 있다. 즉 최대경사도 6%(국내 건축법으로는 12.5%까지 허용)에 6m 길이의 경사로를 설치하면 36cm의 단높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연속하여 이 길이를 한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회 반복되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150cm 각의 경사로참을 두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사로의 총길이는 16.50m가 되고 오르는 높이는 불과 72cm 밖에 이르지 않는다.

급경사 경사로는 어떠한 종류라도 주택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왜냐하면 휠체어의 전복위험은 이미 8~9%의 경사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판의 위치가 높이 조정된 어린이나 애소한 체형의 휠체어 이용자는 체중의 중심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급경사도에서의 전복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① 경사로는 곡선이나 원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항상 직선과 직각으로 이어지고 방향전환점에는 반드시 수평 경사로참을 둔다.

② 경사로의 경사도는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연속길이 6m 이하로 한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반

드시 150×150cm의 참을 설치한다.

③ 보다 길이가 긴 경사로의 경우에는 매 6m마다 중간참을 설치하여 1회 이상 반복하여 경사로가 연속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④ 경사로의 측면에는 휠체어의 이탈을 막기 위한 높이 10cm의 방지턱이 있어야 하고 높이 85cm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⑤ 이탈방지턱 및 핸드레일 상호간의 안목치수 간격은 120c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경사로의 바닥마감재는 요철면으로 인하여 보행불편이나 휠체어 주행시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결빙, 적설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하게 개발된 바닥마감재가 많으므로 선택시 고려한다.

경사로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판단이다. 많은 사람에게 경사로가 계단보다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경사진면으로 걷는 것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의족이용자나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경사로는 반드시 계단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계단

계단은 주거공간의 많은 부분을 접근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계단을 장식의 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현대의 건축물을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 생활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다.

만약 장식적 요소로서의 계단과 턱과 단이 없는 공간과의 둘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항상 '무장애 공간'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① 주택의 접근로는 근본적으로 항상 단차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②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은 반드시 최소 150cm 폭의 참이 있어야 한다.

③ 최상부 계단의 디딤판은 참의 유효폭에 산정치 않는다.

④ 계단의 안목치수 유효폭은 120cm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 원형계단은 가급적 피한다.

⑥ 계단의 양측 핸드레일의 직경은 3~4.5cm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⑦ 핸드레일의 형태가 움켜잡을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이 아니여도 가능하나 직경은 3~4.5cm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⑧ 핸드레일은 계단 시작과 끝지점의 수평으로 30cm 이상 계속 연장되게 처리하고 계단참 등에서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연속되도록 한다.

⑨ 충포시는 핸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양각으로 설치한다.

⑩ 디딤판의 조명은 챤판과의 모서리가 뚜렷이 구분되

도록 처리한다.

(11) 타이머가 부착된 계단실 조명의 소등시간 간격은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정한다.

(12) 계단의 디딤판은 추가로 채색을 하거나 별도의 표시를 하여 논슬립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계단이외의 바닥면 마감재와의 질감 차이가 나도록 조치한다.

주거단지내의 공동시설 역시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무장애 공간'이어야 한다. 모든 주민은 단지내 어떤 시설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주거 외부의 건물 사이에 나있는 통행로는 최소 150cm 폭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는 외부에 만들어진 단지내 모든 통행로가 반드시 최소 150cm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도 공동시설 지역내에서 고려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공동쓰레기 투기시설인 쓰레기콘테이너의 쓰레기투입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만들어져 있다든지 뚜껑을 손쉽게 여닫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몇몇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잘못은 대단히 빈번히 자행된다. 도로변에 있는 우체통을 손을 높이 치켜들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높이에 부착시킨다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다.

#### (6) 쓰레기통

① 쓰레기통은 같이 단차없이 자유로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② 쓰레기통 전면에는 반드시 최소 150×150cm의 수평 정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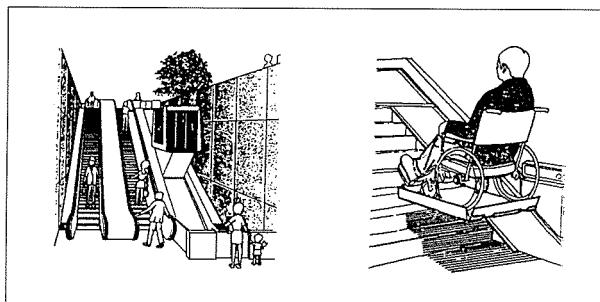
③ 쓰레기통은 반드시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④ 건물외부의 보행로 최소폭은 150cm를 유지해야 한다.

⑤ 쓰레기 투입구의 높이는 85cm를 유지해야 한다.

#### (7) 우체통

① 우체통 역시 일반 보행인은 물론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전면은 최소 150cm 폭의 수평정지면의 확보가 요구되어 진다.



(그림 3) 장애물로서의 계단을 '무장애 공간'화하기 위한 계단용 승강기

#### (8) 주차장 및 차고

① 주거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최소 3%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하고 주차한 자동차와 나란히 추가로 150cm 폭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추가로 확보 요구한 통로의 폭은 차고계획시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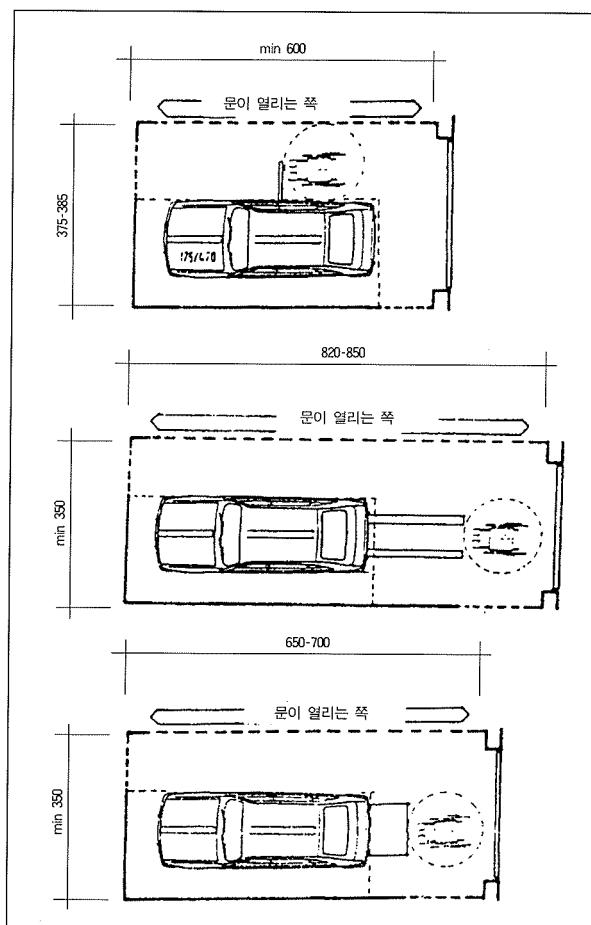
일반 주차구획 보다 폭이 넓은 장애자용 주차장 및 차고는 장애자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놓을 필요가 있다. 주택에서 상당히 많은 휠체어 이용자는 자동차에 탑승한 후 옥내용 휠체어를 그자리에 두고 옥외 도로용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의 출입문을 직각에 가깝도록 열지 못하면 승하차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드시 개인 지정석이 아니라도 방문객을 위한 장애자 전용 주차구획내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차빌딩의 경우에도 턱과 단차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공간내에서의 방화문은 반드시 자동개폐가 되어야 하되 자재문은 절대 피한다.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문의 뒷편에 다른 사람이 막고 서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주거내 통로의 폭은 반드시 120cm 폭의 안목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 4)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차장